

'04. 12. 20

심사보고서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2004년 12월 10일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0일

상정일자 :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004. 12. 15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감사관 박종섭)

제안 이유

충북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
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
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 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여,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
-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본 조례안은 충북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 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 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
- 또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도록 하는 한편,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 아울러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도정감사 기능의 강화와 도민권익 보호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도민감사관 위촉대상을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5급이상 공무원에 재직중에 있던 자는 대부분 60세이상 고령 퇴직자임을 감안, 생산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 5급이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의회의원으로 재직 또는 활동했던 자 등으로 보다 폭넓게 위촉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수정 이유

- 충청북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을 기존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성있는 도민을 위촉토록 함으로써 도민감사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 구성인원을 기준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여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1항)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 감사에 관한 전문성있는 도민을 위촉토록하여 도민감사관의 질적향상을 도모(안 제3조제2항제3호)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안 제4조)
 -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 제4조(임기 등)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4. 12. 15.

제 안 자 : 정상혁의원 외

□ 수정 이유

- 충청북도민감사관 구성 ·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을 기존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성 있는 도민을 위촉토록 함으로써 도민감사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 구성인원을 기존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여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1항)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 감사에 관한 전문성있는 도민을 위촉토록하여 도민감사관의 질적향상을 도모(안 제3조제2항제3호)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조문사용에 부적합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안 제4조)
 -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 제4조(임기 등)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20인”을 “15인”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4조의 제목을 “(임기 및 신분보장)”에서 “(임기 등)”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구성 및 자격) ①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u>20인</u>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u>15인</u>
②.....	②.....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생략)	2. (제정안과 같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행정 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4조(임기 등 신분보장) ① (생략) ② (생략)	제4조(임기 등 신분보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76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북 도민의 자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여,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함(안 제5조)

-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3. 의안 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 4인
2. 도의회 의원 : 1인
3.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 2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④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각각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分의 1의 범위안에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